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
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김 명 옥 인

2016년 2월 29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 및 제3항

별지제2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 를 “생년월일” 로 한다.

별지제3호 서식 중 “3. 주민등록번호” 를 “3. 생년월일” 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 제1항 및 제3항 별지 제2,3호 서식 (주민등록번호)	제5조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 제1 항 및 제3항 별지 제2,3호 서식 (생년월일)

붙임 : 별지 제2,3호 개정서식 (생년월일)

의원신분증발급대장

결재		신분증 번호	발급 년월일	성명	생년 월일	신규 재발급	회수 여부	재발급 사유	반환	사진	비고
국장	의장										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 이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수집되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서식을 생년월일 서식으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제5조 1항 및 3항의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한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명시하는 서식으로 변경

[안 제5조(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) 별지서식 2,3호]